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50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김예지 · 김대식 · 박덕흠
최수진 · 김선교 · 정성국
윤용근 · 강경숙 · 송석준
임종득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4호 중 “제13조”를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 제1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3. (생략)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 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생략) ③ ~ ⑧ (생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3. (현행과 같음) 24. -----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 제13조----- ----- ----- 2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